

함양 금호어울림 리더스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함양군 민원봉사과 - 89577호 (2022.1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급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백번지 134번지 일원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0층 4개동 총 306세대 특별공급 165세대(일반(기관추천) 31세대, 다자녀가구 31세대, 신혼부부 62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div>	(단위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범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세	계	일반공급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1차	2차	
민영주택	2022000820	01	084.9940A	84A	84.9940	26.7008	111.6948	31.3832	143.0780	61.6164	289	29	29	58	9	29	154	135	10	-	
		02	084.9940B	84B	84.9940	26.7008	111.6948	31.3832	143.0780	61.6164	17	2	2	4	1	2	11	6	-	-	
											306	31	31	62	10	31	165	141	10	-	

주택형(약식)		공급 세대수	승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종도금(60%)								잔금 (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84A	289		1층	10	64.925.120	233,074,880	298,000,000	10,000,000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2층	17	64.925.120	243,074,880	308,000,000	10,000,000	10,000,000	2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2,400,000	
			3층	17	64.925.120	249,074,880	314,000,000	10,000,000	10,000,000	2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4,200,000	
			4층	17	64.925.120	256,074,880	321,000,000	10,000,000	10,000,000	2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5~10층	102	64.925.120	259,074,880	324,000,000	10,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1층~4층	126	64.925.120	262,074,880	327,000,000	10,000,000	10,000,000	2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최상층	17	64.925.120	328,074,880	393,000,000	10,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2월 07일(수)	12월 08일(목)	12월 09일(금)	12월 15일(목)	12월 26일(월)~ 12월 28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첨자 대상 계약시간 별도안내 예정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보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보주택 (장소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89-3)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1	7
	장기복무 재군인	6	—	6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6	—	6
	중소기업 근로자	6	—	6
	장애인	5	1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9	2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58	4	6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2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2	1	30
	합 계	154	11	165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차 현장/지적요건/지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주택에 분양받지 못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제1호 및 제8호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흡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차 주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인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합당첨자로 판단되며 당첨일부만 향후 신청하려는 주민(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유주택자 3개월(금융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신청(국민·사채권 및 분양민중공동주택매매 포함)의 신청 제한 기간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나. 주택공급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나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우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간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여부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가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청약통장종류 : 신청 가능한 전용통치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외 지역(함양군, 경상남도)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청약자격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2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발생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지(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한 경우, 천연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청약 및 신청자의 적요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도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접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상일)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역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차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은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 및 제6호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중 동·호수를 변경하고 공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호 특별공급),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공급대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포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무주택공급으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발생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지(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한 경우, 천연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청약 및 신청자의 적요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도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접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상일)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역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차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은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 및 제6호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중 동·호수를 변경하고 공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호 특별공급),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공급대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포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무주택공급으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발생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지(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한 경우, 천연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청약 및 신청자의 적요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도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됨.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접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상일)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역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던 신청이 가능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차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은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 및 제6호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중 동·호수를 변경하고 공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호 특별공급),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공급대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포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무주택공급으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1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보서류를 받은 분. (단, 중요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간																		
	<table> <tbody><tr> <th>구 분</th><th>관련법규</th><th>해당기관</th></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 <td>장애인</td><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td>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tr> <tr> <td>국가유공자(장기복무 재군인 포함) 등 중소기업 근로자</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대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국가보훈처 경감서부보훈청 보상과</td></tr> <tr> <td></td><td>"중소기업인력 지원법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td></tr> </tbody></table>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재군인 포함) 등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대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감서부보훈청 보상과		"중소기업인력 지원법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재군인 포함) 등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대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감서부보훈청 보상과																	
	"중소기업인력 지원법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1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지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던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2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1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지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영양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및 임신신고일(지정됨) 등)로 하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출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입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된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던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table> <tbody><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th><th>사립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th></tr> <tr> <td>2022.12.02</td><td>전년도 소득</td><td>전년도 소득</td></tr> </tbody></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립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2.02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립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2.02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며,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지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지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1세대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 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하거나 미혼인 자녀(양양)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혼 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전 배우자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다자녀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거기나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무의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역이 없는 경우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던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립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2.02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며,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9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지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족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함양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전역세대 발생 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지족 순위별 요건			
구 분	순 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정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정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족 요건인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정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입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